

퇴비 부숙도 주요 위반사례로 살펴보는 농가 관리요령



01 가축분뇨 퇴비 흐름도



02 가축분뇨 처리시 필수 관리사항

검사기록지 검사·보관/살포 시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퇴비화 기준표 / 부숙도 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 (腐熟度)	1,500㎡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부숙중기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소·젖소	염분	2.5% 이하

03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법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 업체명 :

◆ 가축의 종류 :

일자	가축분뇨 자가처리내역			가축분뇨 위탁처리내역				퇴비·액비	
	종류 (분/요/분뇨)	처리 방법	처리량 (m³/일)	종류 (분/요/분뇨)	위탁량 (m³/일)	위탁 운반 업체명 (차량번호)	위탁 처리 업체명	종류 (퇴비/액비)	생· (톤)
	①	②		①		③	③		
	분	퇴비화	15						
				분뇨	50	☐ 퇴비유통전 문조직	☐ 퇴비유통 전문조직		

① 종류는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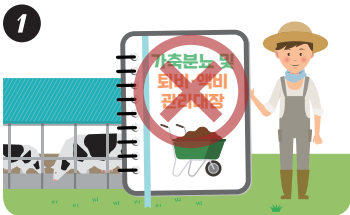
②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등 처리방법을 적습니다.

③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 운반·처리 업체명을 적습니다.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22호] 참고

04 퇴비 부숙도 기준 주요 위반 사례

-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
- 퇴비화 검사
- 퇴비 살포 시 부숙도 준수



퇴비·액비 관리대장 기록관리 미흡



퇴비화 검사 미 실시



퇴비 보관 부적정



부숙도 미준수(미부숙 퇴비 살포)

구분	성분 검사 횟수 위반	기록 관리 위반	퇴비화 기준 (부숙도) 위반	퇴비화기준 (성분) 위반	합계
횟수	19	2	7	5	33

* 위 통계는 전국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단속 실적을 취합한 결과임('21.1~6월)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만원)		
			1차	2차	3차
허가대상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 53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신고대상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 53조 제2항제1호	50	70	100

퇴비 부숙도 등 성분검사 및 검사주기 등 관리기준 위반 시 허가대상 최고 100만원, 신고대상 70만원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법」 제53조)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만원)		
			1차	2차	3차
허가 대상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배출시설·처리시설 설치·운영	제53조 제3항제5호	50	70	100
신고 대상			30	50	70
재활용 신고자			50	70	100

05 기록관리 위반사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주요 위반 사례

- 지역의 축산농가에서는 퇴비 반·출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지역의 축산농가에서는 퇴비·액비 관리대장은 작성했으나 과거 3년 간의 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수 법령 ('가축분뇨법」 제39조)

장부의 기록·보존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
-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기록관리 기준 위반 시 과태료 기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기록·보존 위반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만원)		
			1차	2차	3차
허가 대상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제53조 제3항제16호	50	70	100
신고 대상					
재활용 신고자					

관리 요령

- 농가에서는 축사에서 퇴비 반·출입 시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한 내용을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도록 지도해주시고, 관리대장 작성 시 처리·기재 방법을 교육해주세요.

06 퇴비 검사 및 보관 시 주의사항

성분검사용 퇴비 시료 채취 방법

추출한 퇴비를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채취합니다.

1



퇴적장에 저장된 부숙된 퇴비를 교반한다.

2



시료채취 작업은 이물질이 없는 바닥이나 깔판을 깔고 실시한다.

3



퇴비더미 중 5~10군데에서 시료를 2kg 정도 채취한다.

4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는 작업을 3회 반복한다.

5



쌓여진 원추를 정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한다.

6



평평하게 놓인 퇴비를 선형으로 4등분한다.

7



대각으로 A와 A를 선택하고 B와 B를 버린다.

8



③, ⑥의 작업을 3회 반복한 뒤 시료를 500g 정도 채취한다.

9



채취한 시료는 용기 또는 비닐봉지(지퍼팩 등)에 넣고 밀봉한다.

부숙도 검사기관 검색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농사로 (www.nongsaro.go.kr)
최신 시험연구기관 전체메뉴 목록 열람 가능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의뢰 절차

분석의뢰 신청서 접수

→

시료 접수

→

시료 분석

→

분석결과 통지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원을 제외한 그 외 공정분석기관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퇴비보관 방법

- 부패 방지를 위해 퇴비더미를 교반하여 간헐적으로 공기를 공급해줍니다.
- 퇴비를 보관하는 장소는 퇴비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외부 강수로 인한 물이나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 그 외 세부 관리기준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반 사례

- 지역의 양돈농가에서는 가축분을 농장 외부에 적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또한, 옆 마을의 돼지농가에서는 축사 면적이 1,000㎡인데 부숙도 검사를 연 1회만 하여 지자체 환경과에 적발되었습니다.
- 위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축종별, 규모별 퇴비 부숙도 기준

구분	축사면적(㎡ 이상~이하)						
	50~99	100~199	200~899	900~999	1,000~1,499	1,500~2,999	3,000
한우·젖소·말	적용제외	부숙중기				부숙후기·완료	
		연1회 검사(1년에 1번)		연2회 검사(6개월 1번)			
돼지	적용제외	부숙중기				부숙후기·완료	
		연1회 검사(1년에 1번)			연2회 검사(6개월 1번)		
가금	적용제외	부숙중기				부숙후기·완료	
		연1회 검사(1년에 1번)					연2회 검사 (6개월 1번)
기타(매추리·양·사슴·개)	적용제외	부숙중기				부숙후기·완료	
		연1회 검사(1년에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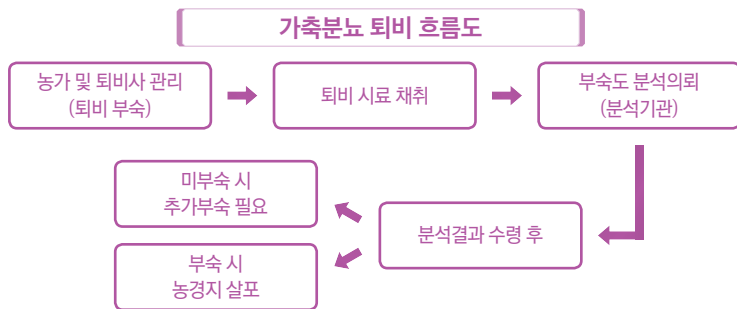
허가·신고규모 배출시설 면적과 부숙도 기준(부숙 중·후기)면적은 상이함

관리 요령

- 농가에서는 퇴비를 축사 내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축사 외부에 보관 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방수포 도포 등)
-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가 ① 퇴비의 적합한 보관, ② 규모에 따른 부숙도 검사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07 퇴비 살포 시 주의사항

살포 전 준비과정



퇴비 살포 사례



퇴비 살포 부적정



퇴비 살포 우수사례

반드시 기억하세요

-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
- 시료에는 채취날짜·시료명·주소·시료내역 등 기재
- 시료를 운송할 때는 밀봉하고, 온도·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
- 시료성분에 변화가 일어 날 수 있는 7~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온도를 20℃ 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

퇴·액비 성분분석 결과지 3년간 보관

주요 위반 사례

- ○○ 지역의 축산농가에서는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 지역의 축산농가에서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하였으나 살포된 퇴비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관련 법령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3], 퇴비·액비화기준)

퇴비·액비화 기준

구분	종류	항 목	기 준	적용일자
퇴비	모든 가축	부숙도 (腐熟度)	배출시설 1,500㎡ 이상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3.25
			배출시설 1,500㎡ 미만 / 부숙중기	
		함수율	70% 이하	'15.3.25
	돼지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소·젓소	염분	2.5% 이하	

관리 요령

- 농가에서는 외부로 퇴비를 반출할 때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춰 반출해야 하고, 매년 축사 규모에 따른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부숙된 양질의 퇴비 살포를 위해 살포 전에 ① 퇴비 부숙도 검사 및 ② 퇴비 성분검사를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